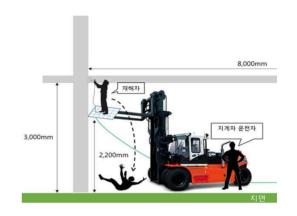
# 지게차 포크 위에서 작업 중 떨어짐

## 재 해 개 요

'16. 5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작업장에서 피재자가 지게차 포크위에 올라 공장 기둥에 설치된 C형강을 해체하던 중 균형을 잃고 지면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

## 재해상황도





기인물(지게차)

재해상황도

# 재해발생상황

○ 포크위에 팔레트를 올려놓고 피재자가 그 위에 탑승한 후 2.2m 높이로 포크를 상승한 상태에서, 산소-LPG 용접토치를 사용하여 건물 기둥에 설치된 C형강 제거 도중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짐

#### ※기인물(지게차)

- 적재능력 : 7,000kg - 형식 : 디젤/좌식 - 최대인상높이 : 3.0m

○ 팔레트는 지게차 포크의 끝부분에 올려놓았으며, 피재자는 팔레트와 마스트 사이에 형성된 공간(약1.25m)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

※팔레트: 1.290mm × 1.000mm

# 재해발생 원인

○ 지게차는 화물의 적재·하역 등의 주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나, 고소 작업을 하기 위해 포크위에 올라가 추락위험이 있는 상태로 작업을 실시함

### 동종재해 예방대책

- 지게차는 화물의 적재·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,
  - 고소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고소작업대 등 전용설비를 사용하여야 함
- 지게차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, 낙하, 전도, 협착, 붕괴 위험 예방 대책,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 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함

## 관련 법규

-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
  -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[작업발판의 끝·개구부 등을 제외한다] 또는 기계·설비·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(탐승의 방지)
  - ⑦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(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)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 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(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)

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화물의 적재·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  - ① 사업주는 다음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, 작업장의 지형·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하며,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  - 2.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(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.)